

단기보호 이용 안내

1. 이용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자립생활이 어렵고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치매나, 뇌졸중 및 만성 노인성 질환의 허약 어르신.
- 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5등급, 재가급여, 시설급여)
- 등급 외 대상자

2. 이용 기간 : 월 15일 이내

3. 이용정원 : 29명

4. 이용절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다.

5.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결정권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자녀를 포함한 보호자 등 법정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하며,(시설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기보호 서비스는 월15회 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 등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2회에 한하여 월 15일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3)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 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행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6.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1) 본 기관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된다.
- 2)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부담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이용료 및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	1일 이용료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유형별 합계금액(15일기준)			
		일 반 (15%)	감 경 (40%)	감 경 (60%)	기 초 (0%)	(1일3식12,900+간식대일2회)2,000	일 반 (15%)	감 경 (40%)	감 경 (60%)	기 초 (0%)
1등급	74,060	11,109	6,665.4	4,443.6	0	14,900	390,130	323,480	290,150	223,500
2등급	68,580	10,288.5	6,172.2	4,114.8	0		377,800	316,080	285,220	223,500
3등급	63,350	9,502.5	5,701.54	3,801	0		366,030	309,020	280,510	223,500
4등급	61,680	9,252	5,551.2	3,700.8	0		362,280	306,760	279,010	223,500
5등급	60,000	9,000	5,400	3,600	0		358,500	304,500	277,500	223,50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
- 의료생활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감액

7.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가.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 나.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 가. 월 이용료 성실 납부의무
-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 다.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 마. 기타 프로그램의 참석의무
- 바. 기타 시설 규칙 이행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무
-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용 부담의무
-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장기지연 시 대리인 선정의무
-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 가. 권리- 수급자에 대한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 청구권, 외출. 외박 청구권, 안전사고 예방청구권, 본 시설 귀책사유로 사고 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전문배상보험적용 청구권, 시설 및 의료기기 이용 및 사용권, 면회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8. 기타

- 단기보호 급여제공 기간은 월 15일 이내로 하며,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연간 (당 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회에 한하여 월 15일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기간연장으로 월 한도액이 초과된 경우 초과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 ※ 가족 등의 외유, 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들 볼 수 없는 경우

2026년 1월 1일

동우요양원요양센터